#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9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배준영·서명옥·임이자

박준태 • 구자근 • 이양수

강명구 · 강대식 · 강선영

김성원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·대청도·소청도·연평도·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, 경기도 연천 등, 강원도 철원 등 접 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.

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) ①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접경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
- 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-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2(정주생활지원금 지원
	특례) ① 「서해 5도 지원 특
	별법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
	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정
	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자 중 접경지역 내 일
	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
	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
	<u>할 수 있다</u> .
	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접경
	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
	<u>자</u>
	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	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
	<u>자</u>
	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
	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이나
	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